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918-10



# 전문심리위원 제도 가이드

2022. 12.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918-10



# 전문심리위원 제도 가이드

2022. 12.





# 발 / 간 / 사

특허심판원의 심판관들은 이미 고도의 기술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최근 4차 산업혁명, 디지털화 등으로 가속화된 기술혁신을 완벽히 따라가기 위해서는 특허심판원의 기술 전문성이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2021년 10월 고도의 기술 지식 또는 숙련된 현장 기술이 요구되는 특허 심판사건에 외부 기술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외부 기술전문가로 하여금 심판장의 요청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여 심판사건에서의 기술적 사실관계 및쟁점사항들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확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특허심판원의 전문성 및 특허 심판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책자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심판관들이 제도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고, 특히 심판관들의 실무에 가장 중요한 전문심리위원 참여절차가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어 심판관들이 제도를 활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부디 본 책자를 통해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특허심판원 심판관들에게 널리 활용되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특허심판원장 김 명 섭



# Contents 목차



## 제1장 개요

1. 제도의 의의 .....	3
2. 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	3
3. 전문심리위원의 지위와 역할 .....	4
4. 기존 전문가 제도와의 차이 .....	4
5. 전문심리위원의 심판절차 참여 관한 상세 흐름도 .....	6

## 제2장 전문심리위원 참여

1. 전문심리위원 제도 규정 .....	9
2. 전문심리위원 참여 요건 .....	9
3. 전문심리위원의 심판 참여 절차 .....	10
4.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결정의 취소 .....	16
5.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	19
6.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	24
7. 심판연구관 지원 .....	27

## 제3장 벌칙 규정

1. 비밀누설죄 .....	31
2. 공무원 의제 .....	32

▣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 별표, 별지 서식**

별표: 전문심리위원의 수당 및 일당 .....	37
별지 제1호서식: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서 .....	38
별지 제2호서식: 결정 .....	39
별지 제3호서식: 확인서 .....	40
별지 제4호서식: 설명 등 요청서 .....	41
별지 제5호서식: 설명 등 요청사실 통지서 .....	42
별지 제6호서식: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등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서 .....	43
별지 제7호서식: 전문심리위원 참여 취소결정 신청서 .....	44
별지 제8호서식: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가 요청서 .....	45
별지 제1호서식 첨부: 전문심리위원 제도에 대한 안내 .....	46

▣ **부 록**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제도 안내 .....	49
--------------------------	----

# 제 1 장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 개 요

1. 제도의 의의
2. 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3. 전문심리위원의 지위와 역할
4. 기존 전문가 제도와 차이
5. 전문심리위원의 심판절차 참여 관한 상세 흐름도





# 제1장 개요



## 1 제도의 의의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심판사건에서 특허심판원 외부의 관련 분야 기술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고 심판절차에 참여하게 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의견이나 설명을 들음으로써 심리에 도움을 받는 제도이다.

전문심리위원을 심판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목적은 기술적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심판절차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기술적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우는, 첨단 기술분야, 현장의 지식·경험이 요구되는 기술과 같이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심판관이라도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한 기술분야 등에서 기술 내용이 난해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주장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쟁점이 불명확한 경우 등이 될 것이다.

기술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심판부는 석명권(민사소송법 제136조)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

## 2 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이 2021. 4. 20. 공포되었고, 관련된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특허심판원 훈령(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 제정,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모집 등과 같은 전문심리위원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기반은 2021. 10. 마련되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특허법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1. 10. 21. 시행되었다.

###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모집된 기술분야〉

인공지능	변속기
자율주행	무선통신(5G/6G)
반도체(포토, 식각, 증착 기술)	바이오헬스
동영상·오디오 압축(MPEG)	로봇 제어
지반안정화	핀테크
이차·연료전지	-

참고로,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2007. 8. 14.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 3 전문심리위원의 지위와 역할

전문심리위원은 담당 심판부에 의하여 특정한 심판 사건에 관하여 지정됨으로써, 그 사건 심판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심판부는 특허심판원장이 작성하여 관리하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게 된다(시행규칙<sup>1)</sup> 제65조의4①).

전문심리위원은 심판절차에서 공평하고 중립적인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때 당사자의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심리위원은 참여하는 사건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심판절차에 참여한다는 것은 설명 또는 의견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다. 어느 한 가지 방식 또는 두 가지 방식 모두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다.

## 4 기존 전문가 제도와의 차이

### 가. 감정인과의 차이

감정은 심판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법규나 경험칙 또는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사실판단을 심판원에

1) 특허법 시행규칙

보고하게 하는 증거 조사이다. 감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sup>2)</sup>인데 대해, 전문심리위원은 심판장의 직권에 의하여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감정을 명할 때는 감정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감정인에게 선서의무를 부여하나, 전문심리위원에 대해서는 설명 또는 의견 요구 사항을 감정사항과 같이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없고, 감정에 비하여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감정은 증거자료가 되지만,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은 증거자료가 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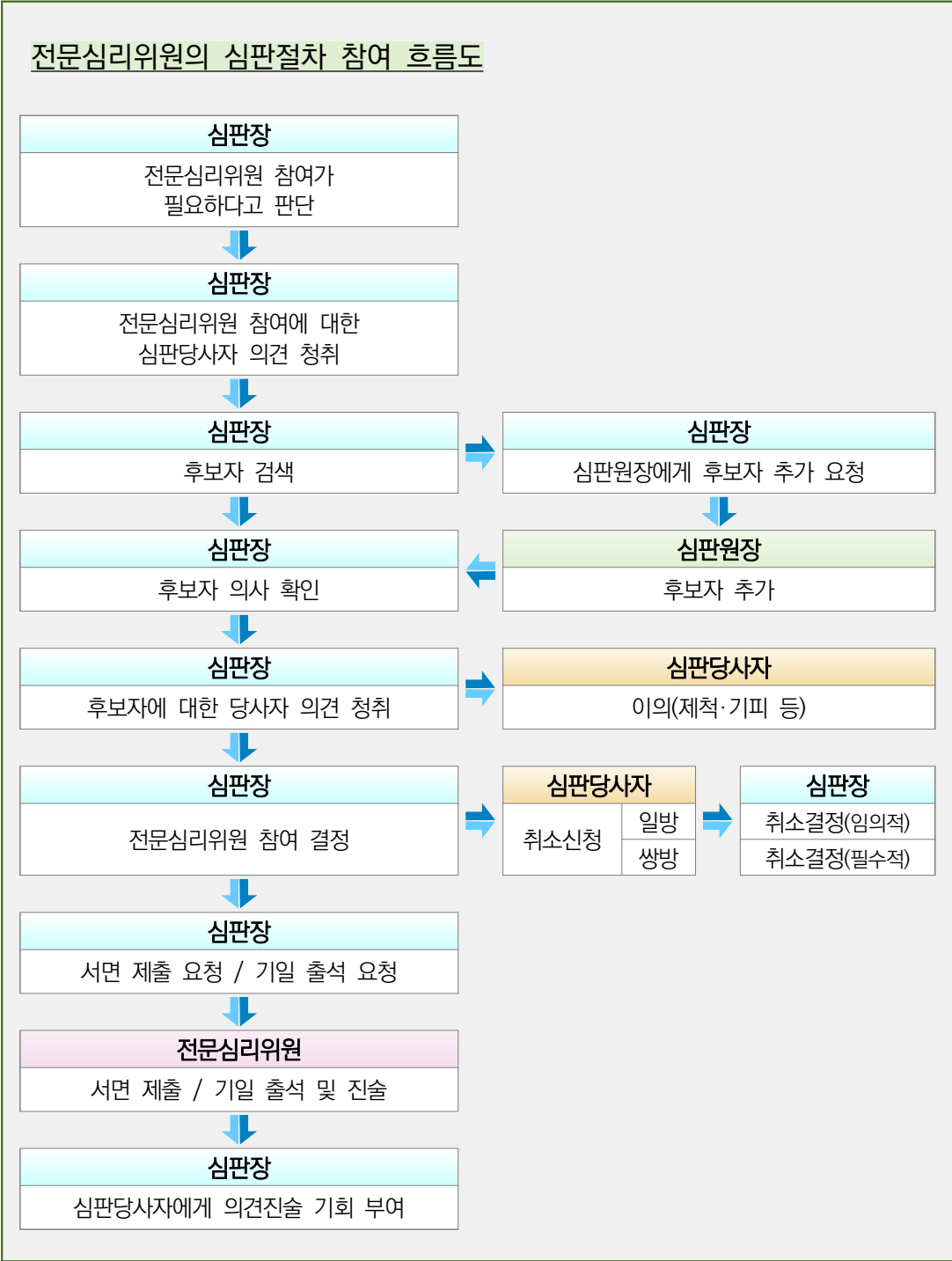
#### 나. 외부전문가 심판자문과의 차이

외부전문가 심판자문<sup>3)</sup>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심판사건에 대하여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을 말한다. 외부전문가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심판장이 직접 적절한 전문가를 찾아 해당 전문가의 동의를 받은 후 심판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 전문심리위원은 기 작성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중에 선택하면 되는 것이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존 외부전문가 심판자문은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한정되어 있었으나,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심판편람 13판 p277

3) 심판편람 13판 p90

**5 전문심리위원의 심판절차 참여 관한 상세 흐름도**



## 제 2 장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 전문심리위원 참여

1. 전문심리위원 제도 규정
2. 전문심리위원 참여 요건
3. 전문심리위원의 심판 참여 절차
4.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결정의 취소
5.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6.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7. 심판연구관 지원





## 제2장 전문심리위원 참여



### 1 전문심리위원 제도 규정

#### 〈특허법〉

제154조의2(전문심리위원) ① 심판장은 직권에 따른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심판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심판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명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전문심리위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심판장”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하여는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관”은 “전문심리위원”으로 본다.

### 2 전문심리위원 참여 요건

#### 가. 직권에 의한 결정

특허심판원의 심판장은 직권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심판절차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은 심판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보조자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은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은 특허심판원 심판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성질의 것이다.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전문심리위원 참여 신청<sup>4)</sup>을 할 수 없으나, 필요에 따라 의견서를 통해 전문심리위원 참여가 필요함을 주장하여 심판장이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 나. 참여할 수 있는 심판 절차

특히,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사건이라면 전문심리위원 참여가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특정 심판사건에 적합한 기술분야 전문가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여 관리하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 있다면, 심판장의 필요에 따라 명단에서 지정된 전문심리위원 후보가 전문심리위원으로써 해당 심판사건에 참여가능하지만,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 적합한 전문가가 없다면 특허심판원장에게 후보자를 별도로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 다. 참여의 필요성

전문심리위원을 심판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목적은 기술적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심판절차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기술적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우는, 첨단 기술분야, 현장의 지식·경험이 요구되는 기술과 같이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심판관이라도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한 기술분야 등에서 기술 내용이 난해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주장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쟁점이 불명확한 경우 등이 될 것이다.

### 3 전문심리위원의 심판 참여 절차

#### 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 작성

특허심판원장은 공개모집이나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연구기관 등에 추천 의뢰 등을 통하여 추천된 전문가 가운데 적격자를 선별하여 전문심리위원 후

4)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보고 있다.



## 나. 전문심리위원 참여 필요성 검토

심판부는 직권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참여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한다. 전문심리위원을 참여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심판절차 진행에 관한 재량에 속하므로 참여의 필요성 판단은 사안과 상황에 적합해야 한다.

전문심리위원 참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심판장은 당사자에게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간단한 안내와 함께 사건에 전문심리위원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 당사자의 의견을 묻는다. 이 때 양 당사자가 모두가 전문심리위원 참여에 부정적이고, 그 이유가 합당하다면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에 대한 당사자 의견 문의는 별도의 서면 절차를 두지 않고, 전화 또는 심판사건설명회 또는 구술심리 과정에서 구두로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한다. 별도의 서면 절차를 두게 되면, 이후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와 유사한 절차를 반복하게 되어 지나치게 절차가 길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에 대한 당사자 의견 문의시 필요한 경우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제도 안내’(부록)에 관한 자료를 송부하여 전문심리위원 제도에 대한 당사자의 이해를 도울 수도 있다.

## 다. 전문심리위원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와 참여결정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기 전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운영규칙<sup>5)</sup> 제4조 ①).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후보자를 검색, 선정하여 그 후보자로부터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의견청취서(별지 제1호서식)를 당사자에게 송부하여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려는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 후보자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후보자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여하게 하는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별지 제2호서식)을 한다. 이 때, 해당 사건의 심판장 또는 주심심판관은 참여결정 서식 작성과 동시에 심판정책과 전문심리위원 제도 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참여결정을 전문심리위원에게 알리는 절차는 심판정책과에서

5)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

이메일 및 전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참여결정 서식 작성 후, 전자서명이 완료되면, 결정등본송달작성도 함께 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참여결정 서식(별지 제2호 서식)이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발송되면, 심판정책과 전문심리위원 제도 담당자는 즉시 참여결정 서식을 전문심리위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그 사실을 전화로 알려야 한다.

순번	선택	심판번호	사건의표시	서류명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1원 0000	2017년 특허출원 제0000000호 거절 결정불복	전문심리위원 지정

심판정책과장은 심판장이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지정된 전문심리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받는다. 확인서는 지정된 전문심리위원이 비밀누설죄(특허법 제226조②), 공무원에 준하는 뇌물죄(특허법 제226조의2 ②, 형법 제129조~제132조), 제척기피 규정(특허법 제148조~제152조)이 적용됨을 확인하는 서류이다.

## 라. 전문심리위원의 심판절차 참여 형태

전문심리위원이 심판절차에 참여하는 형태는 ①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② 구술심리 또는 심판사건설명회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다(민소법 제164조의2②). 구술심리 또는 심판사건설명회 기일에 출석한 경우 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등 심판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것도 가능하다(민소법 제164조의2③). 다만 사건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심판장은 전문심

리위원의 진술이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증인의 퇴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심판장 또는 심판관이 구술심리 또는 심판사건설명회 기일 외에 사적으로 구두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듣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심판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 등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절차 참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마. 설명 또는 의견 요청

심판장은 요청 내용(질문 내용, 설명 또는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을 기재한 요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전문심리위원에게 전달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 제출을 요청하거나 구술심리 또는 심판사건설명회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심판장은 요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할 때, 즉시 심판정책과 전문심리위원 제도 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출원명세서 및 비교대상발명 등과 같이 요청서와 함께 전문심리위원에게 제공해야 할 자료가 있다면 그와 같은 자료들도 전문심리위원 제도 담당자에게 쪽지나 이메일로 전달해야 한다. 심판정책과 전문심리위원 제도 담당자는 심판장이 작성한 요청서 및 참고자료들을 전문심리위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전화로 알려야 한다.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에게 요청 후, 설명 등 요청사실 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전문심리위원과 협의하여 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에게 설명 또는 의견을 요청할 때, 심판연구관으로 하여금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심판연구관을 통해 요청 내용을 당사자와 사전 협의 할 수 있으며, 전문심리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심판연구관으로 하여금 심판장의 요청 내용에 대해 전문심리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설명하게 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해당사건의 주심심판관은 심판연구관에게 해당 사건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바.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

특허심판원은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 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민소법 제164조의2④, 운영규칙 제7조). 이는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을 검토하고 검증할 기회를 부여하고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하는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전문심리위원이 서면으로 설명 또는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심판정책과 전문심리위원 제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할 것인데, 담당자는 전문심리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설명 또는 의견이 기재된 서면을 주심심판관에게 쪽지나 이메일로 알림과 동시에 특허넷 시스템에 탑재되도록 한다.

전문심리위원이 서면으로 설명 또는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심판장은 의견진술 안내서(별지 제6호서식)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 부분과 함께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심리위원이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일 예로 심판장은 구술심리 기일에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지금 전문심리위원의 설명(또는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방식으로 구두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당사자가 기일에 바로 의견진술을 하기 어렵다고 하는 경우 추후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사. 전문심리위원의 좌석 위치

전문심리위원이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심판장은 심판정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전문심리위원의 좌석 위치를 적절히 지정하고, 전문심리위원이 심판사건설명회에 참석하는 경우 전문심리위원의 좌석은 심판관과 가까운 위치에 적절히 지정한다.

## 아. 조서 등의 기재

전문심리위원이 구술심리, 심판사건설명회 기일에 참여하는 경우 조서 또는 결과 보고서에 그 성명 및 발언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전문심리위원이 심판장의 허가를 받아 심판관계인에게 질문을 한 때에는 그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심리위원이 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전문심리위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질문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 자. 기타 사항

전문심리위원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의견은 사전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을 말하는데, 전문심리위원이 어떠한 의견까지 진술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전문심리위원이 진술할 수 있는 의견은 기술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관한 의견이 될 것이고, 사건 전체의 결론 또는 개별 쟁점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판단을 제시하는 의견은 진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문심리위원은 원칙적으로 심판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진술하여야 하고, 쟁점 외의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이 진술하기 전에 이와 같은 점을 유의하도록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

## 4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결정의 취소

### 가. 관련 규정

#### 〈특허법 시행규칙〉

제65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① 심판장은 법 제15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때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후보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② 심판장은 법 제154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참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참여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2. 7.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전문심리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으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운영규칙〉

제10조(참여결정의 취소) ① 심판장은 당사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면(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에 대해 검토한다.

②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당사자와 전문심리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그 결정을 통지한다.

③ 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을 검토하여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취소를 신청한 당사자에게만 그 결정을 통지한다.

④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 심판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4조에 따라 다른 후보자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나. 참여결정 취소의 의의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에는 임의적 취소와 필요적 취소가 있다.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① 직권이나 ② 당사자의 신청으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취소할 수 있다(임의적 취소). 또한 법원은 당사자가 합의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결정으로 취소하여야 한다(필요적 취소).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 심판장은 그 신청을 검토하여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당사자와 전문심리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그 결정을 통지하고,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취소를 신청한 당사자에게만 그 결정을 통지한다(운영규칙 제10조).

## 다. 임의적 취소

당사자는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에 대하여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방식은, 기일에 말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신청을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게 하는 것은 그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은 심판장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참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은 심판장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참여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는 전문심리위원을 심판절차에 참여하게 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없어지게 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결정 신청의 의사는 전문심리위원 참여 자체에 대한 취소를 희망하는 것과 전문심리위원을 참여하게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 특정 전문심리위원 지정의 취소를 희망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특허법 제154조의2는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심판절차에 참여하게”하고 있으므로 지정과 참여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결정으로 되는 것이어서 지정 결정에 대하여만 취소를 구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가 특정 전문심리위원으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것이고 특허심판원이 그 상당성을 인정하는 때에도 전문심리위원 지정만을 취소할 수는 없고,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하고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중에서 다른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참여하게 하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 라. 필요적 취소

당사자가 합의로 참여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때에는 심판장은 필요적으로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민소법 제164조의3②). 당사자의 절차에 대한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취지이다.

양쪽 당사자가 동시에 참여결정의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의 이유를 명시할 필요는 없다. 취소의 이유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취소가 필요한 것이므로 이유를 명시하게 할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한쪽 당사자가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 심판장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볼 수도 있다. 그 결과 상대방도 같은 의견이라면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결정의 취소는 필요한 것이 된다.

## 5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 가. 관련 규정

#### <특허법>

제154조의2(전문심리위원) ① 심판장은 직권에 따른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심판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심판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명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전문심리위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심판장”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하여는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관”은 “전문심리위원”으로 본다.

#### <특허법 시행규칙>

제65조의3(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의 선정 등)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장이 법 제154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작성·관리한다.

1. 이공계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이공계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기술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이공계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기술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동일·유사한 기술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
- 6. 그 밖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허심판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② 특허심판원장은 후보자 명단을 작성·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연구기관 등에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특허심판원장은 후보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선정된 사람에게 선정 사실을 통지하고, 그 후보자를 추천한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도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65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① 심판장은 법 제15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때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후보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② 심판장은 법 제154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참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참여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심신상의 장애로 전문심리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3.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위가 있는 경우
- 4.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으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영규칙〉

제11조(수당 등) ① 전문심리위원의 수당 및 일당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심리위원의 여비와 숙박료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지급하고, 수당과 일당은 심판이 종료된 후 지급한다. 다만 전문심리위원이 더이상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심판장이 인정한 때에는 심판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수당과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나. 전문심리위원의 수

전문심리위원의 수는 각 사건에 관하여 1인 이상으로 되어 있다(특허법 제154조의2②). 이는 필요에 따라 복수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수의 전문심리위원이 필요한 경우는, 예를 들면 인공지능 기술과 자율주행 기술이 융합된 복합 기술분야와 같이 서로 다른 기술분야의 전문가가 모두 필요로 되는 경우 등이 될 것이다. 심판장은 한 번에 복수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참여결정을 할 수도 있고, 한 명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참여결정을 한 후 다시 다른 사람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여결정을 할 수도 있다.

## 다. 전문심리위원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65조의3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65조의4에 규정되어 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65조의4에 따르면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때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후보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전문심리위원을 후보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할 경우 심판장은 후보자 명단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람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특허심판원이 후보자 명단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람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였는데 그 전문심리위원의 전문성, 자질 등이 부족할 경우 전문심리위원 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기 전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운영규칙 제4조 ①). 들어야 하는 것은 전문심리위원 참여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다.

의견 청취의 절차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면, 특허심판원은 전문심리위원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할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후보자로부터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양 쪽 당사자에게 그 후보자의 이름, 전문분야, 경력 등을 기재한 의견청취서(별지 제1호서식)를 보내는 방법으로 당사자로부터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운영규칙 제4조①). 당사자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낼 때, '전문심리

위원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한다.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선정할 때에 그 후보자는 다른 일정이 있을 수 있고,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언제든지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업무를 담당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한다. 특허심판원이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때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소속, 이름, 전문분야, 자격, 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가 실제로 의견을 진술하여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표시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당사자는 의견청취서를 받고, 선정된 전문심리위원(들)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양쪽 당사자가 당해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에 관하여 동의하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 쪽 당사자가 동의하는 취지의 의견, 다른 당사자가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인 경우에는 심판장은 반대 취지의 의견을 검토하고,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면 그 후보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후보자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 취지의 의견이 합리성이 없고, 근거 없이 거부태도를 나타내는 것일 때에는 당해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전문심리위원에 지정할 수 있다.

## 라.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

앞서 본 바와 같이 특허심판원은 특허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65조의4①). 특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여 관리한다(시행규칙 제65조의3). 심판부가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기는 어렵고 각 심판부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기도 어려우므로, 특허심판원장이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후보자 명단을 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허심판원장은 공개모집을 할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연구기관 등에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도 있다(시행규칙 제65조의3②). 한편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는 이미 작성되어 있는

후보자 명단에서 적임자인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해당 심판부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새로운 후보자를 명단에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후보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 전문가를 추가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고, 전문가를 특정하지는 아니한 채 일정한 분야만을 특정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추가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특허심판원장은 이와 같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가 요청 또는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정할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 작성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정하고 그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관리한다. 특허심판원장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정할 때에 그 사람이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될 만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 조사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 마.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대우

전문심리위원에게는 특허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일당이 지급되고,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여비 및 숙박료가 지급될 수 있다(시행규칙 제65조의5). 전문심리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특허심판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심판장은 사안의 난이, 전문심리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심판절차 참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 수당을 증액할 수 있다(운영규칙 별표).

전문심리위원의 여비와 숙박료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sup>6)</sup>(시행규칙 제65조의5②). 전문심리위원 참여로 인하여 당사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전문심리위원의 수당,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고에서 지급하고, 심판비용에는 산입하지 않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65조의5③).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수당은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되어 심판절차에 참여(‘심판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의

6) 「공무원 여비 규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의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

견을 진술'하는 것)한 전문심리위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심판절차에 참여하기 전에 참여결정이 취소되거나 심판이 취하되는 등으로 심판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전문심리위원에 대해서도 전문심리위원이 심판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서면을 작성하는 등 준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심판장의 재량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수당은 심판이 종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심판장은 소송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전문심리위원이 더 이상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운영규칙 제11조).

심판장은 사안의 난이, 전문심리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심판절차 참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전문심리위원의 수당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전문심리위원이 지급받을 수당의 100%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고, 이 때 심판장은 수당 증액에 필요한 사유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운영규칙 제11조 별표).

## 6

###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 가. 관련 규정

〈특허법〉

제154조의2(전문심리위원) ① ~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하여는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관”은 “전문심리위원”으로 본다.

#### 나. 개요

전문심리위원의 중립성·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판관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심리위원은 심판관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가 제공하는 전문적 정보가 편파적인 것이면 안된다. 또한, 전문심리위원이 그 절차 참여에 관하여 중립성·공평성을 잃는다면 그것은 전문심리위원 제도 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 그래서 전문심리위원에 관하여도 제척·기피가 인정되는 것이

다. 전문심리위원은 심판관의 기술적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기술 전문분야에서의 경험칙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판부에 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심리위원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심판관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한 규정(특허법 제148조부터 제152조)을 전문심리위원에 대해서 준용하도록 하였다.

### 다.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전문심리위원은 사건이나 사건 당사자와의 사이에, 특허법 제148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준하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는 경우에 제척된다. 제척이란 일정한 원인이 있는 때에 법률상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전문심리위원이 제척의 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 ① 전문심리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인 경우
- ② 전문심리위원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③ 전문심리위원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경우
- ④ 전문심리위원이 사건에 대한 증인, 감정인이거나 감정인이었던 경우
- ⑤ 전문심리위원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⑥ 전문심리위원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특허여부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 ⑦ 전문심리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특허심판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심판을 한다(특허법 제152조).

## 라. 전문심리위원의 기피

전문심리위원에게 제척원인 외에 공정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전문심리위원을 기피할 수 있다(특허법 제150조①). 공정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통상인이 판단할 때 전문심리위원과 사건 및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로 보아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이 편파·불공정한 것이 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말한다. 예를 들면, 사건의 당사자와 전문심리위원이 학연 또는 지연 관계에 있어 밀접한 관계인 경우, 전문심리위원이 그 사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안에 관하여 관계가 있고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당사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공정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전문심리위원과 사건의 관계에서 나온 사정이므로 구체적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전문심리위원의 사상, 전문분야에서의 학문적 입장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공정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객관적 사정이므로 전문심리위원의 전문적 분야에서의 입장 등에 비추어 자신의 주장과 다른 설명이 될 것 같다는 주관적 불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전문심리위원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한 기일에서 본안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을 한 후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특허법 제150조②). 이는 당사자가 전문심리위원에게 문제가 되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가 참여한 절차를 밟았을 때에는 기피신청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전문심리위원에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몰랐거나 기피의 원인이 그 후에 생긴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의 원인을 모른 것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 마. 제척 또는 기피의 심판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또는 기피의 심판은 당해 심판부가 결정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심판부에 이유를 밝혀 신청해야 하고,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척 또는 기피에 이유가 있다는 결정이 있으면, 그대로 당해 전문심리위원은 절차에서 배제된다.

## 7 심판연구관 지원

### 가. 관련 규정

#### <특허법>

제132조의16(특허심판원) ①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을 둔다.

③ 특허심판원에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의3(심판연구관의 직무)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인 심판연구관으로 하여금 특허취소신청, 심판 및 재심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그 밖의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나. 심판연구관의 역할

심판연구관은 심판장의 요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고, 전문심리위원에게 심판장의 요청사항에 대한 설명 자료를 작성 및 제공할 수 있으며, 심판장의 요청사항을 전문심리위원에게 상세히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심판연구관은 전문심리위원에게 요청할 사항을 당사자와 사전 협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사건의 주심심판관은 심판연구관에게 해당 사건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심판연구관에게 사건의 조사·연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주심심판관이 총무심판관을 통해 심판연구관에게 사건을 직접 의뢰해도 되고, 심판정책과에 전화, 쪽지 등을 활용하여 의뢰해도 된다.



# 제 3 장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 벌칙 규정

1. 비밀누설죄
2. 공무원 의제





## 제3장 벌칙 규정

### 1 비밀누설죄

#### 가. 관련 규정

##### <특허법>

##### 제226조(비밀누설죄 등) ① (생략)

②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나. 의의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심판절차에 참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될 수도 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되어 있는바(형법 제127조), 전문심리위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심판절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당사자 등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란 전문심리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사항을 말한다. 누설이란 비밀 사항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알리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 2 공무원 의제

### 가. 관련 규정

〈특허법〉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① (생략)

②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나. 의의

전문심리위원에게는 공평성·중립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전문심리위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심판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과 같이 공평성·중립성을 지켜야 하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뇌물수수죄 등의 벌칙 적용에 관하여 전문심리위원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 다.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

전문심리위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의 형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 수뢰, 사전 수뢰

제129조(수뢰, 사전 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2) 제3자 뇌물제공

제130조(제3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3) 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4) 알선수뢰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참고문헌

- ◇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제도 해설」, 2007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 별표, 별지 서식

별표: 전문심리위원의 수당 및 일당

별지 제1호서식: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서

별지 제2호서식: 결정

별지 제3호서식: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설명 등 요청서

별지 제5호서식: 설명 등 요청사실 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등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서

별지 제7호서식: 전문심리위원 참여 취소결정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가 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첨부: 전문심리위원 제도에 대한 안내





■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 [별표]

**전문심리위원의 수당 및 일당(제11조제1항 관련)**

1. 전문심리위원의 심판절차 참여에 대한 수당 및 일당은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가. 서면만 제출한 경우: 최초 1회 60만원, 1회를 초과하는 때 1회마다 30만원
  - 나. 기일에 출석만 한 경우: 최초 1회 70만원, 1회를 초과하는 때 1회마다 35만원
  - 다. 서면 제출과 기일 출석을 동시에 한 경우: 서면 제출 1회 및 기일 출석 1회 80만원, 1회를 초과하는 때 서면 제출마다 30만원, 1회를 초과하는 때 기일 출석마다 35만원
2. 참여결정의 취소나 심판 취하 등의 사유로 전문심리위원이 준비하고 있던 심판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준비하고 있던 심판절차에 대해서는 수당 및 일당을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때 서면을 1회 제출하고 최초 기일 출석을 준비하고 있던 경우에는 아래의 '해당 심판절차에 참여하였을 경우 받을 금액'을 20만원으로 하고 기일에 1회 출석하고 최초 서면 제출을 준비하고 있던 경우에는 아래의 '해당 심판절차에 참여하였을 경우 받을 금액'을 10만원으로 한다.
  - 가. 설명 등 요청서만 송달받은 경우: 해당 심판절차에 참여하였을 경우 받을 금액의 10%
  - 나. 설명 등 요청서를 송달받고 심판연구관으로부터 요청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경우: 해당 심판절차에 참여하였을 경우 받을 금액의 30%
  - 다. 서면 일부를 작성한 경우: 해당 심판절차에 참여하였을 경우 받을 금액의 50%
  - 라. 서면 작성을 완료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심판절차에 참여하였을 경우 받을 금액의 100%
3. 사안의 난이, 전문심리위원이 수행한 직무 내용, 심판절차 참여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전문심리위원이 특별한 노력을 들였다고 심판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심리위원이 지급받을 최초 1회분 수당 및 일당(서면 제출과 기일 출석이 동시에 있었던 경우는 80만원을 말한다)의 10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한다.
4.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위가 있어 참여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당 및 일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 [별지 제2호서식]

## 특 허 심 판 원 제 0 부 결 정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전문심리위원

### 주 문

이 사건 심판절차에 ○○○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여하게 한다. / ○○○○. ○○. ○○.자  
취소결정 신청을 기각한다. / ○○○○. ○○. ○○.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 / (피)청구  
인의 전문심리위원 제척(기피) 신청을 기각(인용)한다.

### 이 유

특허법 제154조의2(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신청이유는 …하나, …는 …  
하므로 이유 없다. / 특허법 제154조의2(실용신안법 제3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3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심판장 ○ ○ ○

■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 [별지 제3호서식]

## 확인서

심 판 번 호

전문심리위원

상기 본인은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제척 및 기피에 관한 특허법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과, 비밀누설죄에 관한 특허법 제226조제2항의 규정과, 뇌물죄에 관한 특허법 제226조의2제2항의 규정을 확인하였습니다.

○○○○. ○○. ○○.

전문심리위원 ○ ○ ○ ( 서 명 )

■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 [별지 제4호서식]

## 특 허 심 판 원 제 0 부 설 명 등 요 청 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수 신 전문심리위원 ○○○ 귀하

아래의 요청 내용을 ○○○○. ○○. ○○.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요청 내용에 대해 ○○○○. ○○. ○○. ○○시에 ○○○○에서 개최되는  
구술심리(심판사건설명회)에 출석하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 내용

1. 이 사건에 …에 관한 …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
2. …

○○○○. ○○. ○○.

심판장 ○ ○ ○



■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등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전문심리위원이 ○○○○. ○○. ○○.에 제출한 설명(의견)서를 보내드리오니,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심리(심판사건설명회)에서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설명(의견)서 1부.

○○○○. ○○. ○○.

심판장 ○ ○ ○

■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전문심리위원 참여 취소결정 신청서

심 판 번 호

제 출 인

대 리 인

제 출 일 자

### 신 청 취 지

「○○○○. ○○. ○○.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신 청 이 유

이 사건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하여 …하므로, 특허법 제154조의2(실용신안법 제3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 ○○. ○○.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특허법 제154조의2(실용신안법 제3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3제2항에 따라 양쪽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 ○○. ○○.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별지 제8호서식]

		<b>원 장</b>
기 안	심판장	

###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가 요청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심판절차에 참여하게 하고자 하나, 현재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적당한 후보자를 찾을 수 없으므로, 아래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추가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성명	소속	전문분야	연락처
홍길동	○○○○	○○○○	010-○○○○-○○○○

○○○○년 ○○월 ○○일

■ 별지 제1호서식 첨부

[전문심리위원 제도에 대한 안내]

## 전문심리위원 제도에 대한 안내

1.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심판 사건의 적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심판절차에 민간의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그 설명 또는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2.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은 감정과 달리 증거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3. 특허심판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4. 당사자는 전문심리위원이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5. 양쪽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전문심리위원을 참여시키는 결정의 취소를 신청한 때는 참여결정이 취소됩니다.
6. 전문심리위원의 수당,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 부 록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제도 안내





##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제도 안내

### 1 전문심리위원 제도 의의

- 특허심판원이 전문적인 기술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심판장의 필요에 의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특허심판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

### 2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선정

- (자격기준)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담보하고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전문심리위원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기준\* 설정

\* 이공계 박사 학위자, 이공계 석사 / 학사 취득 후 관련 기술분야 4년 / 6년 이상 종사자, 동일·유사 기술분야 10년 이상 종사자, 기술사 자격자, 심판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3 전문심리위원 지정

◆ 당사자 의견을 들어 심판장이 후보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며, 전문심리위원은 비밀유지를 확약

- (지정)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참여를 결정한 경우, 참여의사가 있는 후보자 중에서 1인 이상을 해당 사건의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
- (후보자 추가) 해당 사건의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할 적절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심판장은 심판원장에게 후보자의 추가를 요청
- (확인서) 지정된 전문심리위원은 비밀누설죄, 공무원에 준하는 뇌물죄, 제척·기피 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

## 4 심판절차 참여

◆ 전문심리위원은 심판절차에서 **서면·구술로 설명·의견을 제시**하며, 심판장은 제시된 설명·의견에 대해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참여방법)** 전문심리위원은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는 방법으로 심판절차에 참여하며, **합의에는 참여 불가**

\* 심판사건설명회 출석도 포함

□ **(역할)** 전문심리위원은 심판사건의 **기술내용**과 관련된 사안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장의 요청사항**에 응해 **설명이나 의견**을 제시

-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등 **심판관계인**에게 **질문도 가능**

\*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진술이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증인의 퇴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다만, 전문심리위원은 **심판장의 보조자·조력자**로서,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의견은 심리시 **보충적 참고자료**로만 활용

□ **(심판장 보조)** 심판연구관은 전문심리위원에게 심판장의 요청사항에 대한 **설명자료를 작성·제공**하고 심판장의 요청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

- 또한 심판연구관은 전문심리위원에게 **요청할 사항**을 당사자와 사전 **협의**할 수 있음

## 5 전문심리위원 수당

### ◆ 법원 전문심리위원과 동일한 수준의 수당 지급

- **(지급수준)** 전문심리위원의 충실한 참여유도를 위해 수당을 지급하며, 그 간의 운영경험이 축적된 법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당 지급

\* 기일 출석에 필요한 여비도 지급하며, 공무원 출장여비 수준으로 지급

- **(지급금액)**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한 심판절차의 종류 및 횟수에 따라 최소 60만원부터 차등 지급

\* 수당 및 여비는 국고에서 지급하고, 심판비용에는 불산입

### 〈전문심리위원 수당〉

구분	최초 1회	추가 1회마다
서면 제출	60만원	서면 제출 30만원 기일 출석 35만원
구술심리/심판사건설명회 출석	70만원	
서면 제출 + 구술심리/심판사건설명회 출석	80만원	

\* 심판취하 등으로 준비하고 있던 심판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준비 정도에 따라 수당의 10~100% 지급

\* 전문심리위원이 특별한 노력을 들였다고 심판장이 인정하는 경우, 최초 1회분 수당 내에서 증액지급 가능

- **(지급시기)** 심판종료 후 수당을 지급하되, 심판장이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판종료 전이라도 지급 가능

\* 여비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급





## 전문심리위원 제도 가이드

발행일 : 2022년 12월

발행처 : 특허심판원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TEL : (042) 481-5489

FAX : (042) 472-3474

ISBN : 979-11-6884-097-3 13500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범위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small>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처 표시</li> <li>-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li> <li>-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li> </ul>